

장애학생 특별지원 위원회 규정

제정 2011. 3. 2

개정 2012. 3. 1

개정 2016. 3. 1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
- ②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
- ③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
- ④ 장애학생지원부서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- ⑤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⑥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「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사항

제4조(구성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는 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.
- ② 복지위원회의 간사 외 장애학생 지원 사항에 대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될 수 있다.

제5조(기타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